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0 - 22 - 061호(사건번호 : 201001조사005)

안 건 명 (주)문화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문화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표이사 김재철

의결연월일 2010. 4. 23.

주 문

1.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자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구매 희망가격을 2010.4.26일(월)까지 (주)에스비에스에게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30일(금)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5.3일(월)까지 방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구매 희망가격을 2010.8.31일(화)까지 (주)에스비에스에게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매월 말 1회씩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단서

○ 조사원인 : 인지(2010.2.4일)

○ 사건번호 : 201001조사005

○ 인지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이하 “MBC”)이 (주)에스비에스(이하 “SBS”)로부터 동 사가 보유한 2010~2016년 4차례의 올림픽 및 2010~2014년 2차례의 월드컵 중계방송권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2. 조사 경과

○ 2010.1.6~19일 :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권 관련 실태점검

※ 방송협회(1.6일), 케이블TV방송협회(1.7일), IB스포츠 · KT(1.11일), KBS · MBC · SBS(1.18~19일)

○ 2010.1.26일 : KBS·MBC의 SBS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신고서 접수

○ 2010.1.27~2.4일 :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기초자료 분석

- o 2010.2.5~11일 :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 MBC · SBS 현장조사
※ SBS(2.5일), MBC(2.8일), KBS(2.11일)

- o 2010.3.4일 : 시정조치(안) 송부
- o 2010.3.4~9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협의
- o 2010.3.15일 : KBS · MBC · SBS 의견진술
- o 2010.3.17일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지상파 방송 3시간 자율적 협상을 권고)

— < 지상파 방송 3시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관련 방통위 권고 > —

1.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방송 3시간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방송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한다.
3. 남아공월드컵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남아공월드컵이 공동 중계 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

- o 2010.4.14~20일 : 권고 이후 협상경과 등 자료제출 요구 및 분석

3. 사실조사 결과

가. 스포츠 중계방송권의 의미

- o 스포츠 중계방송권(이하 “중계권”)이란 방송사업자 등 권리자가 당해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를 TV, 라디오 또는 인터넷 등 방송매체를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저작권을 의미
 - 올림픽 ·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는 대회를 주관하는 IOC · FIFA 등이, 프로스포츠는 리그에 참여하는 연맹이나 프로구단이 보유

- 방송사업자는 IOC · FIFA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중계권을 양도 받아 자사 채널 또는 계열 방송사업자를 통해 해당 스포츠 경기를 독점적으로 중계하거나,
 -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권의 일부를 다시 양도하여 공동으로 중계

나. 국내의 올림픽 · 월드컵 등 중계권 구매 관행

- 올림픽 · 월드컵 등 대규모 체육경기 대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3사가 해외 스포츠 중계권 구매를 위해 결성한 자율적 협의체인 코리아풀 (Korea Pool)을 통해 IOC · FIFA 등에서 중계권을 공동 구매하고,
 - 소규모 대회나 일회성 이벤트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 1개사가 대표로 중계권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가 그동안의 일반적 관행
-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스포츠 중계권의 상업성이 강조되고, IOC · FIFA가 마케팅 대행사와 연계하여 중계권료를 높이면서
 - 방송사업자들이 코리아풀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중계권을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1996년 이후 현재까지 KBS 4회, MBC 2회, SBS 2회)

< 지상파방송 3사의 코리아풀 파기 사례 >

- 1996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 KBS 단독계약
- 1997년 프랑스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 MBC 단독계약
- 1999년 브라질 축구대표팀 초청 경기 : KBS 단독계약
- 1999년 나이지리아 세계청소년축구 : SBS 단독계약
- 2000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2001~2004년) : MBC 단독계약
- 2006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등 아시아 축구연맹(AFC) 패키지(2006~2012년) : KBS가 스포츠마케팅 대행사인 IB스포츠와 단독계약
- 2006년 WBC 준결승전 : KBS가 단독중계 고집하였으나 결국 동시중계
- 2006년 올림픽(2010~2016년) 및 월드컵(2010 · 2014년) : SBS가 단독계약

다. SBS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구매(2006.6~8월)

- 2006년 2010~2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2014년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 구매 과정에서 코리아풀을 통한 공동입찰을 희망한 KBS · MBC와 독자 계약을 추진한 SBS간 갈등 발생
- 2006.5.30일 지상파 방송 3사 사장은 월드컵과 올림픽 관련 모든 중계권 협상을 “올림픽 · 월드컵 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취지의 “스포츠 합동방송 합의서”를 작성

< 스포츠 합동방송 합의서(2006.5.30일) 내용 >

- 2010~2016년 올림픽, 2010~2014년 월드컵 및 2007~2012년 아시아 축구 연맹 개최 경기의 중계권 협상을 한국방송협회 “스포츠분과 TV매체 소위원회” 산하 “올림픽 · 월드컵 특별위원회”로 단일화
- 중계권 협상은 지상파 · 위성 · 케이블 · DMB · IPTV 등 국내 모든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
- KBS · MBC · SBS(계열사 및 대리인 포함)는 IOC와 FIFA에 중계권과 관련한 어떠한 개별 접촉도 하지 않음

- 그러나, SBS는 미국법인 SBS 인터내셔널(이하 “SBS Int”)을 통해 2006.6.16일 IOC로부터 2010~2016년 올림픽 중계권을 OOO 달러, 8.25일 FIFA로부터 2010 ·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OOO 달러에 구매

< SBS의 올림픽 · 월드컵 중계권 계약 내용 >

- 올림픽 중계권 계약 내용
 - 주체 : SBS Int과 IOC(계약일자 : 2006.6.16일)
 - 대상 :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
 - 금액 : 총 OOO 달러(2010 · 2012년 : OOO 달러, 2014 · 2016년 : OOO 달러)
 - 범위 : 지상파를 포함한 케이블TV · 위성 · DMB ·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중계
- 월드컵 중계권 계약 내용
 - 주체 : SBS Int과 FIFA(계약일자 : 2006.8.25)
 - * 아시아지역 판매대행권을 가진 FMS(Football Media Services)와 계약 협의

- 대상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 2014년 브라질 월드컵
- 금액 : OOO 달러(2010년 : OOO 달러, 2014년 : OOO 달러)
- 범위 : 지상파를 포함한 케이블TV · 위성 · DMB ·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중계
- 기타 부속권리 : 여자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 U-17 월드컵, U-20 월드컵, U-17 여자 월드컵, U-19 여자 월드컵 등 FIFA가 주관하는 30개 대회

< SBS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구매 세부 경과(2006.6~8월) >

일자	세부 내용
2006.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방송(올림픽/월드컵) 특별 위원회 구성(3사 스포츠국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2010~2016년), 월드컵(2010, 2014년) 중계권 협상 및 계약이 주목적
2006. 4.30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풀, IOC와 중계권 협상(스위스)
2006.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IB스포츠와 올림픽 · 월드컵 중계권 획득 관련 합의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권 계약주체는 SBS로 하되, SBS계열사를 제외한 매체에 대한 재판매권은 IB스포츠가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계약서를 작성키로 함(실제 계약서는 미작성)
2006.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풀, 올림픽 입찰금액 협의하여 IOC에 입찰서 제출(서명자 : 방송협회 기획조사팀장 김윤택)
2006.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풀, 지상파방송 3사 사장 스포츠 합동방송 합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올림픽 관련 모든 중계권 협상을 “올림픽·월드컵 특별위원회”로 창구 일원화 및 개별접촉 금지
2006.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Int, IOC에 올림픽 입찰서 제출
2006.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Int, 올림픽 계약체결
2006.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 국장 회의, KBS·SBS는 합의를 깐 SBS에 의해 올림픽 중계권료가 상승하였으므로 코리아풀과의 차액을 SBS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계약서 원문 공개를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SBS Int는 마케팅 업체 역할을 했으며, 단독방송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
2006.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Int, 월드컵 계약 체결

라. 중계권 협상 경과 : 1기 - 중계권 협상 개시(2006.11~2007.3월)

(1) 협상 개요

- 2006.11.23일 방송협회 사무처의 중재안 제시를 시점으로 SBS와 KBS · MBC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 방송협회 사무처 중재안(2006.11.23일) >

- (1안) 올림픽 · 월드컵 모두 조건 없이 양도 / SBS Int에 대한 수수료도 분담
- (2안) 올림픽은 조건 없이 양도하고, 월드컵은 지상파 관련 권리(지상파 및 지상파 DMB)만 양도 / SBS Int에 대한 수수료는 1개 대회만 분담
- (3안) 올림픽 · 월드컵 모두 지상파 관련 권리만 양도 / SBS Int에 대한 수수료 분담

- 올림픽 중계권료 인상분 OOO 달러*에 대한 분담 비율, 중계권 배분 대상을 지상파 방송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

* SBS의 올림픽 중계권료 계약금액 OOO 달러와 코리아풀이 IOC에 제시하였던 중계권료 OOO 달러의 차액

(2) 회의 개최 및 공문 교환 실적

- 동 기간 중 8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본부장급이 참석한 경우가 5회, 스포츠 국장급이 참석한 경우는 3회

(3) 주요 쟁점 및 방송사별 입장

< ① 올림픽 중계권료 인상분의 분담 비율 >

- SBS는 중계권료 인상분을 KBS · MBC · SBS가 각각 25:25:50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 KBS · MBC는 코리아풀 파기에 책임이 있는 SBS가 90%, 양사가 각각 5%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② 월드컵 중계권료 인상분의 분담 비율 >

- SBS는 올림픽과 달리 월드컵은 코리아풀이 입찰가격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중계권료 인상분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 KBS · MBC는 SBS의 단독입찰로 중계권료가 OOO 달러 가량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SBS가 90%, 양사가 각각 5%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③ SBS Int 수수료 분담 비율 >

- o SBS는 협상 및 구매를 대행한 SBS Int에 중계권료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상파방송 3사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KBS · MBC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성의 차원에서 양사가 각각 OO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입장 표명

< ④ 협상 대상인 중계권의 범위 >

- o SBS는 지상파 및 지상파 DMB만 중계권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KBS · MBC는 케이블TV · 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매체를 통한 중계권이 협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지상파 매체에 대해서는 양 사가 SBS Int에 판매 대행은 맡길 수 있다는 절충안 제시

(4) 협상 세부 경과

일자	세부 내용
2006.11.23	<p>◇ 시간·장소 : 7:30~ / 여의도 참석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 윤덕수 정책기획센터장- MBC : 정홍보 기획조정실장- SBS : 이남기 정책기획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o 방송협회 사무처에서 제시한 6개(안)중 3개(안)을 가지고 향후 논의키로 합의<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 올림픽/월드컵 중계방송권 조건 없이 양도, 수수료 포함- 2안 : 올림픽 조건 없이 양도, 월드컵 지상파 관련 권리(지상파, 지상파 DMB 포함)만 양도, 수수료는 올림픽 · 월드컵 중 1개 대회만 적용- 3안 :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관련 권리(지상파, 지상파 DMB, 자사케이블 포함)만 양도, 수수료 포함
2006.12. 5	<p>◇ 시간·장소 : 7:30~ / 여의도 참석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 윤덕수 정책기획센터장- MBC : 정홍보 기획조정실장- SBS : 이남기 정책기획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o KBS는 3개안 모두 수수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1안 재검토 희망o MBC는 1,3안을 희망, 1안중 수수료 현실화 검토 필요 입장o SBS는 2,3안을 희망, 협회 차원의 논의결과 수용의견 표시

2007. 1.11	<p>◇ 시간·장소 : 7:30~ / 여의도 참석자 - KBS : 윤덕수 정책기획센터장 - MBC : 정홍보 기획조정실장 - SBS : 이남기 정책기획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풀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3사 스포츠국장급 회의에서 세부사항 논의
2007. 1.17	<p>◇ 시간·장소 : 14: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 KBS : 박영문 스포츠기획사업팀장, 이엽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MBC : 오창식 스포츠국장 - SBS : 황호형 스포츠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MBC : 모든 권리를 3사 공유, 코리아풀과의 차액은 SBS가 부담하되, 추후 기타매체 판매수익으로 SBS 수익을 보전하는 것도 방법임 ○ SBS :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방안 수용 불가
2007. 2. 6	<p>◇ 시간·장소 : 12:00~ / 여의도 참석자 - KBS : 진홍순 특임본부장 - MBC : 정홍보 기획조정실장 - SBS : 이남기 정책기획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 올림픽 차액에 대해 50% 부담 용의가 있음(KBS:MBC:SBS = 25:25:50) - 월드컵은 3안 중 지상파와 비지상파권리(9:1)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2.26일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 되기를 요청함 ○ KBS : SBS 제안에 대해 내부검토후 재논의 의사 표명
2007. 2.22 (오전·오후 각 1회)	<p>◇ (오전) 시간·장소 : 7:30~ / 여의도 참석자 - KBS : 진홍순 특임본부장 - MBC : 정홍보 기획조정실장 - SBS : 이남기 정책기획본부장</p> <p>◇ (오후) 시간·장소 : 15:00~ / 여의도 참석자 - KBS : 박영문 스포츠기획사업팀장, 이엽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MBC : 오창식 스포츠국장 - SBS : 김한종 스포츠국 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풀 차원에서 논의에 합의, 협상시한을 7월까지로 함 ○ 대립되는 현재 문제점에 대해 KBS와 MBC가 안을 제시하기로 함 - 수수료 : (SBS) 중계권료 총액의 3% 제시, (KBS·MBC) SBS가 부담할 사항 - 세금 : (SBS) SBS Int 통해 중계권료를 송금하여 세금절감되었으므로 협상시 고려 필요, (KBS·MBC) 기존에도 개최국 조직위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절감 - 중계권료 인상분 : (SBS) 올림픽 000만 달러, (KBS·MBC) 올림픽·월드컵 000만 달러 - 방송권 : (SBS) 지상파 관련 권리, (KBS·MBC) 모든 권리
2007. 3. 6	<p>◇ 시간·장소 : 14:00~ / 여의도 참석자 - KBS : 박영문 스포츠기획사업팀장, 이엽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MBC : 오창식 스포츠국장 - SBS : 황호형 스포츠국장, 김한종 스포츠국 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 3사, 코리아풀 유지 원칙을 다시 확인

마. 중계권 협상 경과 : 2기 - 사실상의 협상 중단(2007.4~2009.12월)

(1) 협상 개요

- o 2007.5월 SBS는 월드컵 중계권에 포함되어 있는 2007년도 FIFA Other Events* 중계권 판매를 제안하면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2차례 제안하였으나, KBS · MBC는 이를 거절
 - * 20세 이하(U-20) 월드컵, 17세 이하(U-17) 월드컵, 여자 월드컵, 비치사커(Beach Soccer) 월드컵 등 FIFA가 주관하는 30개 대회
 - 2007.10월 3사간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료 인상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기존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침
- o 2008.1월 SBS는 KBS가 아시아 축구연맹으로부터 구매한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2008~2009년) 중계권에 대한 배분을 요청하고,
 - 2009.3월까지 추가로 4차례에 걸쳐 중계권 배분을 요청하면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KBS · MBC는 이를 거절
- o 2009.7월 방송 3사는 2007년까지의 논의 사항과 별개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2009.8월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음

(2) 회의 개최 및 공문 교환 실적

- o 동 기간 중 스포츠 담당 국장 또는 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6차례 개최(본부장급 회의는 없음)되었고, 공문(E-mail 포함)은 21회 발송 (SBS 13회, KBS 7회, MBC 1회)
 - 이 중 2007년에 2차례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년과 2009년 역시 회의 개최 횟수가 각각 2회에 불과하며,

- 2007.10.31일자 회의를 제외하고는 3시간 협조 필요성이나 협상 시한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된 바 없음

(3) 협상 세부 경과

일자	세부 내용
2007.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BS는 'FIFA 월드컵 패키지 및 올림픽' 방송권에 대한 Korea Pool 협상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KBS에 월드컵 중계권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2007년 FIFA Other Events'(FIFA 20세 이하 월드컵/17세이하 월드컵/ 여자 월드컵/ 비치사커 월드컵) 방송권 판매를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권료 3백만불(3사가 1/3씩 분담)은 월드컵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면 그 방송권료에 포함시키고, 경기배분은 3사가 협의하여 진행 - '2007년 FIFA Other Events' 제작비용 000억원 예상되므로 3사 분담 제안
2007.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BS는 SBS가 제안한 '2007년 FIFA Other Events' 판매 협상 요청에 대해 방송편성 및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공식 거절
2007.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BS는 KBS의 거부사유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KBS와 MBC에 다시 제안 → 답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문제) 주요관심경기만 방송3사가 지상파에서 분할 편성하고 대부분은 각사 케이블에서 편성, 그래도 편성상 어려움 잔존 시 SBS가 우선적 처리 - (예산문제) 중계권 000불은 편의상 산정한 것이며 그 금액과 지급시기는 추후 논의 가능
2007. 5.17	<p>◇ 시간·장소 : 14: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 박영문 스포츠기획사업팀장, 이엽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MBC : 오창식 스포츠국장 - SBS : 황호형 스포츠국장, 김한종 스포츠국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BS는 FIFA 패키지 중 작은 대회를 통해 협상 실마리 모색 필요 o KBS, MBC는 FIFA 패키지 중 작은 대회도 올림픽, 월드컵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사항
2007.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BS는 자사 보유 AFC(아시아축구연맹) 패키지 중계권을 개방하는 선결조건으로 SBS가 확보한 올림픽/월드컵패키지 중계권에 대해서도 KBS가 그동안 제의한대로 개방을 제안
2007.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BS는 KBS에 AFC(아시아축구연맹) 패키지 방송권 관련, 방송3사가 합의('06.2.23)*한 바 있으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월드컵 패키지 방송권은 자사가 구매한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의지를 표명하고, 위 6.19일자 문서에서 언급한 구체적 제의내용을 적시해 줄 것을 요청 * 주요합의 내용('06.2.23) : AFC 패키지 분배에 관한 건, 2010년 월드컵 중계권료 배분 비율 등 7개 사항
2007.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BS는 방송3사가 합의한 사항은 SBS가 월드컵/올림픽 방송권을 독자 구매에 따른 위반으로 무효화 된 것으로 간주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월드컵 전체 권리 및 추가 인상분에 대해 분담방안 요구
2007.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BS는 KBS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 자사가 구매한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의지를 표명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권료 과다 인상은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분담방안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힘 o AFC 패키지 방송권에 대한 분배원칙도 기존합의 내용 존중 요청

2007.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KBS에 AFC 패키지 방송권에 대한 분배원칙도 기존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도 자사가 구매한 동일한 조건으로 개방의지 재표명
2007.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는 SBS에 올림픽/월드컵패키지에 대해 자사가 요구한 사항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준다면, AFC 패키지 방송권에 대해 MBC와 협의해 분배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와 AFC패키지에 대해 대한 방송권을 공유한 상태이므로, KBS만의 결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 조속히 방송협회 산하 스포츠 분과 실무위원회를 통해 상기건 협의, 해결 요구
2007.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5: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 박영문 스포츠기획사업팀장, 이엽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MBC : 오창식 스포츠제작단장 - SBS : 황호형 스포츠국장 ○ 올림픽 중계권료 추가분(000 달러)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측 주장 - KBS : MBC : SBS = 2.5 : 2.5 : 5 - KBS, MBC 측 주장 - 올림픽 추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해 아직 미 합의 ○ 월드컵 중계권료 추가분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측 주장 - 월드컵 추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000 달러 분담 - KBS, MBC 측 주장 - 월드컵과 관련해서 000 달러의 추가분 발생
2008.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KBS에 각종 스포츠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C패키지 :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3사 분배) -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 3사 공동중계에 대한 대원칙에 변함없음 - 프로농구('06~'07시즌 중계권 등), MLB('07시즌 중계권료 2차분 지급 등) 등
2008.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는 SBS의 ‘각종 스포츠 현안’ 포괄적 해결 요구사항이 당사가 그동안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사안별 해결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C패키지 3사 분배,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보도본부 풀-제 복원 등의 경우는 MBC를 포함한 3사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래 2가지 사항과 별건 처리 - 프로농구 및 MLB는 당초 계약사항을 인정하고 방송권료 지급요청
2008.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KBS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사항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C패키지 3사 분배,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보도본부 풀-제 복원 등 현안들을 MBC를 포함한 3사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데 동의하며 포괄적 처리 요청 - AFC패키지 개방 문제만 해결되면 프로농구 및 프로야구(MLB) 문제 해결 가능
2008.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권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방송공간 신청을 연기하여 왔으나, 밴쿠버올림픽 방송위원회에서 사용 공간을 확정(5.30일까지) 지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MBC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공간 신청 요청 ※ 문서답신은 없으나, KBS는 의견서('10.3.8)에서 6.2일 전화로 공간신청을 하였다고 주장
2008.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4: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 박영문 스포츠기획사업팀장, 이엽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SBS : 황호형 스포츠국장 ○ SBS의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3사 공유 문제 협의

	<p>◇ 시간·장소 : 15: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 KBS : 박영문 <u>스포츠기획사업팀장</u>, 이엽 <u>스포츠중계제작팀장</u> - MBC : 윤재근 <u>스포츠제작단장</u>, 허연희 <u>스포츠국 부국장</u> - SBS : 황호형 <u>스포츠국장</u>, 김한종 <u>스포츠국 부장</u> o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분배와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분배는 올림픽 기간 중에 협의키로 함</p>
2008. 7.15	<p>o SBS는 E-mail(발송자 : 스포츠국 김상우)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관련 2차 WBM(방송권자 회의) 참석 요청을 했으나 KBS, MBC는 E-mail로 불참 통보(발송자 : KBS 김현철, MBC 강동수)</p>
2008. 11.26	<p>o SBS는 E-mail로 2010 FIFA 월드컵 1차 WBM(방송권자 회의) 참석 요청</p>
2009. 1.20	<p>◇ 시간·장소 : 10:3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 KBS : 이동현 <u>스포츠국장</u>, 김춘길 <u>스포츠중계제작팀장</u> - MBC : 윤재근 <u>스포츠제작단장</u>, 조강진 <u>스포츠국 부장</u> - SBS : 허인구 <u>스포츠국장</u>, 신지식 <u>스포츠제작부장</u> o 올림픽, 월드컵과 AFC(아시아축구연맹) 중계권료 배분 협의를 위해 각사 입장을 정리, 차기회의시 논의키로 함</p>
2009. 2.17	<p>o SBS는 KBS에 2006년 2월 23일 체결된 방송 3사 합의에 근거하여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남은 4경기 중 가장 먼저 벌어질 3경기(북한전 홈경기, UAE 원정경기, 사우디 홈경기)를 방송3사 형평에 맞춰 배분 요청 ※ SBS는 방송권 배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귀책사유는 KBS에 있음을 통보</p>
2009. 2.25	<p>o KBS는 방송3사의 합의사항은 SBS의 위반사항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며, AFC패키지는 올림픽/월드컵 패키지와 연계하여 협상되고 있어 개방치 않은 것임 - 그러나, 전향적 해결을 위해 잔여경기 중 KBS가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3경기(한국 vs UAE 원정경기, 북한 vs 이란, 한국 vs 이란 홈경기)에 대해 공동 중계를 제안(방송권료 000원 구매 요구) ※ KBS는 요청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월드컵 예선 취재 제한 등)를 취할 것이며, 귀책사유는 SBS에 있음을 통보</p>
2009. 3. 4	<p>o SBS는 두 차례에 걸쳐 최대 관심경기인 3경기(북한전 홈경기, UAE 원정경기, 사우디 홈경기) 중계권 배분을 재차 요청(3.6 / 3.20 내용 동일) ※ SBS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귀책사유는 KBS에 있음을 통보</p>
2009. 3. 6 3.20	<p>◇ 시간·장소 : 11: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 KBS : 이동현 <u>스포츠국장</u>, 김춘길 <u>스포츠중계제작팀장</u> - MBC : 허연희 <u>편성제작국 부국장</u>, 이도윤 <u>스포츠기획제작부장</u> - SBS : 허인구 <u>스포츠국장</u>, 신지식 <u>스포츠제작부장</u> o 각사는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료 관련 논의가 2007년 이후 중단된 상황에서 2007년까지의 논의사항과 별개로 향후 올림픽, 월드컵 제반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8월 중순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p>
2009. 7. 1	

* 음영부분(일자)은 지상파방송 3사간 수발신 공문의 내용이며, 비음영 부분은 회의 내용임

바. 중계권 협상 경과 : 3기 - 협상 재개 시도(2009.12월~2010.3월)

(1) 협상 개요

- o KBS는 2009.12.18일 · 2010.1.8일 및 14일 3차례, MBC는 2010.1.8일 및 14일 2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배분을 SBS에 요청하였으나,
 - SBS는 2010.1.12일 및 25일 2차례에 걸쳐 KBS · MBC의 공문에 대한 답신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중계 배제로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협상을 거부
- o 2010.1.19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진흥기획관) 주관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국장 회의에서 3사 모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 1.21일 방송협회 주관 스포츠 국장 회의에서는 중계권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코리아풀 복원만 원칙적으로 합의
- o KBS · MBC는 2010.1.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BS가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방송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면서, 동시에 방송분쟁조정을 신청

(2) 회의 개최 및 공문 교환 실적

- o 동 기간 중 7차례 회의(5회는 방통위 주관)가 개최되었고, 공문은 17회 발송(SBS 6회, KBS 7회, MBC 4회)
 -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코리아풀 복원 등 원론적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고, 실질적 협의는 이루어진 바 없음

(3)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행태

- o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개막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 모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자사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를 비방하고,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태를 보임

< 주요 보도내용(예시) 및 보도횟수('10.2.8~3.1일) >

KBS 뉴스 9('10.2.9일)	MBC 뉴스데스크('10.2.8일)	SBS 8시 뉴스('10.2.9일)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SBS 비난성명 인용 보도 및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 등 소개	▲SBS 단독중계로 국민통합 기능 약화 ▲국가대표 활약상은 이윤추구 수단이 아닌 문화적 자산 ▲SBS는 방통위 조정 시도도 거부, 공영방송 책무 침해	▲단독중계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미국 등 외국은 단독 중계 관례 정착 ▲방송권 배분 제안은 타사가 거부
9일, 16회	8일, 16회	4일, 8회

(4) 협상 세부 경과

일자	세부 내용
2009.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BS는 SBS에 방송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배 요청
2010.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5: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이도윤 스포츠기획제작부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o 국가대표 축구(A매치)경기 공조 합의 o 지상파방송 3사 공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키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을 시점으로 3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조를 하기위해 국민적 관심사 경기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키로 함 - 합의서 관련, 각사에 보고 후 합의서 내용을 작성키로 함 o KBS · MBC는 올림픽, 월드컵 논의를 요청했고 SBS는 추후 검토해보기로 함
2010.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BS는 SBS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배 재요청 o MBC는 SBS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배 요청
2010.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BS는 KBS와 MBC에 손실 및 리스크부담에 대한 보상 등 선결조치 필요 강조
2010.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BS · MBC는 1월 20일까지 지상파방송 3사가 협의할 것을 SBS에 요청→답신없음
2010.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진흥기획관 주관 회의] o 지상파 방송 3사 기존 입장을 재확인

	<p>◇ 시간·장소 : 15:00~ / 방송협회 회의실 참석자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이도윤 스포츠기획제작부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풀 복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2010.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방송권을 KBS와 MBC에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협상계속을 위해서는 손실과 리스크부담 등에 관한 입장 천명이 필요하다고 밝힘
2010. 1.26	<p>(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MBC는 방송통신위원회에 SBS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방송법령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방송분쟁조정도 신청
2010.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MBC는 SBS에 밴쿠버동계올림픽 취재협조 요청 - AD카드 배분 요청(KBS : 취재용 12장 및 주차증 3장, MBC : 취재용 8장 및 주차증 2장),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 제공, 김연아 피겨 등 국민 관심 경기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2010.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KBS·MBC는 취재협조 요청에 대해 IOC 가이드라인 등을 이유로 거부 - 단, 뉴스보도나 해설을 위한 자료화면 제공요청은 관련 규정 검토
2010.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KBS·MBC에 IOC 가이드라인과 국내 방송법에 따른 뉴스용 자료화면 제공(2분/일, 정규뉴스용으로만 제한) 및 별도취재 협조(현지 취재용 ID카드 3장, 주차증 1장 제공) 통보
2010.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는 SBS에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별개로 합동방송 협조 요청 - 2차 WBM신청 내역 정보 공유 - 회선,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순차 활용 방안 - AD카드 신청(신청 마감일 : 2월말) ※ KBS는 '09.12월초 남아공월드컵 2차 WBM(방송권자 회의) 기간 중, 현장 코멘터리 및 Extra devices(ENG카메라포지션, 믹스트존 액세스 등) 신청 마감과 관련해 SBS에 공동참여의사를 밝혔으나, SBS가 양사 스포츠국장간 유선통화를 통해 SBS 신청분의 순차 활용 방안으로 충분하다면서 KBS의 참여 및 신청분 접수를 거절한바 있다고 주장
2010. 2.19	<p>[방송운영총괄과장 주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중계 관련 쟁점과 제도 개선 협의
201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는 SBS에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별개로 원활한 합동방송 수행을 위해 2006 독일 월드컵 당시 신청했던 AD카드 수량(118장)과 비슷한 수량을 요청(신청 마감일 : 2월말)
2010.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는 SBS에 AD카드 필요량(167장) 재요청
2010. 2.24	<p>[방송진흥기획관 주관 방송 3사 본부장급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금지행위 위반 신고, SBS 비방방송 중지 등 전제조건 요구 ○ KBS·MBC는 공동중계 및 제반사항 합의 요구
2010.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KBS·MBC에 2010남아공월드컵 방송을 위한 AD카드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접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AD카드 배분 문제는 중계권 재판매에 관한 방송3사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결정될 사항임을 통보 ○ 아울러, KBS에는 추가적으로 코멘터리 박스 등 남아공 현지 중계방송을 위한 제반시설 사용신청은 기한이 지났으며, 시설사용문제는 FIFA와 SBS간의 상호 협약으로 그 신청내역을 알려줄 수 없음도 통보

2010.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는 SBS에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원활한 합동방송 수행을 위해 AD카드 신청분 및 현지시설, 공간, 회선, 코멘터리 등의 순차 사용 보장 요청
201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KBS · MBC에 뉴스 보도용으로 제공한 밴쿠버 동계올림픽 영상에 대해 뉴스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사용 중지 촉구 및 시정조치가 없으면 가능한 제반조치 예정임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방송사 영상 사용(일본 후지TV, 중국 CCTV, 미국NBC 등)에 대해서도 SBS의 국내방송권 침해라면서 입수 경위 요청
2010. 3. 5	<p>[방송운영총괄과장 주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전제사항 및 쟁점사항 협의
2010. 3.16	<p>[방통융합정책실장 주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판매 등을 고려 협상시한 협의 ○ 공동중계 중계방식에 따른 기술적·현실적 측면 검토

* 음영부분(일자)은 지상파방송 3시간 수발신 공문의 내용이며, 비음영 부분은 회의 내용임

사. 중계권 협상 경과 : 4기 - 협상권고 이후(2010.3.17일~)

(1) 협상 개요

- 자율적 협상 권고 이후 2010년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큰 진전이 없고, KBS·MBC의 SBS 상대 민·형사 소송 계획 발표 (4.12일, 4.13일) 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도달

< 주요쟁점 및 피심인별 입장 >

쟁점	SBS	KBS	MBC
①희망경기	경우에 따라 배분	모든 경기	모든 경기
②중계권 재판매범위	지상파 한정	SBS와 동등 권리 (비공식적으로는 MBC 제시안과 동일한 수준까지 양보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지상파 권리만 구매 가능하나, 중계권료의 10% 차감
③중계방식	언급 없음	순차방송/공동중계	순차방송/공동중계(1경기 2사)
④중계권료 산정범위	중계권료 전체(OOO\$)	Other Events 중계권료 (OOO\$) 차감	Other Events 중계권료 (OOO\$) 차감
⑤중계권료 희망가격	방송권료+가치상승분+제반 비용(세금, 이자, 보험료 등)+ 각종 중계배제 손실 등	OOO\$+SBS Int 수수료, 세금, 송금이자, 보험료 등 분담 ※ OOO\$=[(OOO\$-Other Events OOO\$) × 90%(지상파 방송권)] ÷ 3사	1,823만\$+Other Events 제작비, 보험료, 송금이자 등 분담 ※ OOO\$=OOO\$+SBS Int 수수료 3%(OOO\$)
⑥Other Events 손실보전	단독수행에 따른 비용과 손실	SBS 증빙시 분담가능	SBS 증빙시 분담가능
⑦제반비용	세금, 이자, 보험료 등	SBS 증빙시 분담가능	SBS 증빙시 분담가능
⑧SBS Int 수수료	지상파분의 3% ※(OOO\$×90%×3%)/3사 =OOO\$	Other Events(OOO\$) 제외한 3% 인정 ※ OOO\$의 3%(OOO\$)	Other Events(OOO\$) 제외한 3% 인정 ※ OOO\$의 3%(OOO\$)

⑨ 중계권료 가치상승	한국, 북한, 일본 출전에 따른 가치상승분 가격 등에 반영	객관적 기준에 의한 상호 합의시 반영 → 계량하기 힘든 부분(4.12일 기자회견)	SBS의 구체적인 안 제시 요구 →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가 계산(4.13일 기자회견)
⑩ 공동중계에 따른 불이익	브랜드 가치상승 등의 기회 상실비용 반영	객관적 기준 모호하여 정확한 가치산출 곤란	추상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산출 곤란
⑪ 비방보도로 인한 손실	비방보도로 인한 SBS 브랜드 이미지 손실비용을 방송권료에 반영 또는 기타 방법으로 협상 가능	상동	상동
⑫ 위험부담 비용	한국 본선진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계권 획득	상동	상동
⑬ AFC 패키지 중계 배제에 따른 손실	방송권료에 반영 또는 기타 방법으로 협상 가능	상동 (밴쿠버 단독중계와 상쇄)	상동 (밴쿠버 단독중계와 상쇄)

* ④, ⑥~⑬은 SBS가 KBS·MBC에 대하여 가격 산정시 포함 요소로 제시한 사항

- o KBS와 MBC는 중계권 재판매 범위(모든 권리→지상파 관련 권리), SBS 인터내셔널에 대한 수수료(3% 인정, 3사 균등부담) 등 일부 쟁점에 대해 기존 입장보다 다소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SBS가 추가 제기한 쟁점을 고려한 총괄적 구매희망 가격은 제시하지 않았고,
 - SBS는 가격 산정에 고려될 요소를 권고 이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판매자 입장에서 구체적 가격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음
- o 또한, KBS·MBC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SBS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KBS 4.12일, MBC 4.13일), 이에 대해 SBS는 반박자료를 배포

(2) 회의 개최 및 공문 교환 실적

- o SBS와 MBC는 3.21일부터 4.5일까지 4회의 스포츠 담당 국장급 대면 협상*이 이루어졌고, 공문은 10차례(SBS 4회·MBC 6회) 교환

* 3.21일, 3.23일, 3.26일, 4.5일

(3) 협상 세부 경과(MBC-SBS)

일자	세부 내용
2010.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는 SBS에 협상회의 일시 확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19일과 3월 22일 2회 요청
2010.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7:00~18:30 / 여의도 렉싱턴 호텔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이도윤 <u>스포츠제작부장</u>, 김종현 <u>스포츠제작부 차장</u>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 차장 ○ SBS는 MBC에 비방보도, AFC 패키지 배제의 손실보상 등에 대한 제안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의 기본틀은 월드컵 써브라이언스 계약임 - 협상 언론 노출 금지, 비방 금지, 제3자 개입 금지를 요청 - 개별협상 원칙(방송협회나 방통위에서의 회의 개최 거부 의사 표시)
2010. 3.23 (회의참석시 공문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5:00~16:30 / 여의도 렉싱턴 호텔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이도윤 <u>스포츠제작부장</u>, 송민근 <u>스포츠제작부 차장</u>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엄재용 정책팀 차장, 이상근 <u>스포츠제작팀 차장</u> ○ MBC의 제안에 대한 SBS의 입장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4월이후 AFC패키지 불참의 보상과 2010 동계올림픽 독점중계의 이익을 상계 - FIFA Other Events 의무중계비용(000원)은 증빙서류 제출시 보상 가능 - 2010 월드컵 계약금액을 구입금액으로 인정, 방송3사 균등 부담 - SBS Int에 대한 수수료 3% 인정(단, SBS가 50% 부담) - SBS 기납입한 방송권료 이자 부담 가능(증빙서류 제출시) - 2010 남아공 월드컵 관련 이미 종료된 Other Events 방송권료 000 달러 차감 - 한국 등 주요경기 합동방송, 기타경기 1경기 2사 중계 희망 ○ MBC는 SBS에 3월 26일까지 의견제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권의 범위(지상파관련 권리 비율), AD카드 신청의 추가 및 변경가능 여부 - 중계방송의 형식(순차방송 또는 합동방송) ○ SBS는 MBC에 회의원칙 합의서(안)을 문서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내용 녹음·녹취 금지, 비공개, 비방보도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 SBS는 MBC에 제안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방보도 손실 보상요청, 위험부담과 추가적 가치상승분 보상 요청 - AFC패키지 방송불참, FIFA Other Events 단독편성 부담, 의무중계비용 보상 방안 요청 - 지금보증금, 보험금, 송금 등 제반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 ○ SBS는 MBC에 방송권 재분배를 위한 자율협상이므로 매번 공문으로 협의하는 것과 협상과정시 상대방의 말을 제지하는 행동은 협상에 지속에 영향을
2010.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는 SBS에 3월 26일까지 방송3사 합동중계에 대한 동의 표시 요청
2010.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MBC에 자율협상 요청(공문 대신 협상일지로 대체 요구)
2010.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17:00~18:30 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김종현 <u>스포츠제작부장</u>, 송민근 <u>스포츠제작부 차장</u>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 차장 ○ SBS는 MBC에 제안서(MBC 제안서 제시기한 : 4월 1일 오후 5시)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이후 비방보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방안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희망 경기 및 구매 희망 가격 제안 요구(방송권의 범위는 지상파 TV, 라디오, DMB로 제한, 뉴미디어권은 제외) - 가격산정시 포함요소(남아공 월드컵 방송권료, Other Events 단독수행에 따른 비용과 손실, 남아공월드컵 방송권의 가치 상승, SBS Int 수수료, 송금이자·보험료 등 제반비용,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각종 비방으로 인한 SBS의 손실, 위험부담비용, AFC패키지 배제에 따른 손실) 제시 - AFC패키지에 대한 MBC의견은 수용 불가 - 광고우선협상은 MBC가 코바코에 공문을 보내 여유가 생긴 것으로 판단 - AD카드는 2월 28일 마감되었고 협상진전될 경우 SBS의 기신청범위내에서 변경가능 ○ MBC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각각의 포함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청 - 광고우선협상기간을 감안해서 4월 15일을 협상기한으로 할 것을 제안
2010.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는 SBS에 협상 관련 확인 요청(기한 : 3월 31일 오후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카드 변경가능 기한 및 개수 - SBS와 FIFA의 스폰서 우선광고판매기간의 단축 여부 - 산술적 계산이 불가능한 가격산정시 포함요소에 대한 금액 및 가이드라인 (Other Events 단독수행에 따른 비용과 손실, 남아공월드컵 가치 상승,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송금이자·보험료 등 제반비용, 각종 비방으로 인한 SBS의 손실, 위험부담비용, AFC패키지 배제에 따른 손실)
2010.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MBC 공문(3.30)에 대한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카드 신청이 2월 28일 마감, 변경가능여부는 추후 FIFA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 FIFA 스폰서 우선광고판매기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현재 FIFA에 질의하고, FIFA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가격산정시 포함요소를 포함한 가격산출이 가능(취득원가법, 기회상실비용 포함 원가법, 브랜드가치를 포함한 수익환원법, 공현도대가를 포함한 원가법 등을 이용)하다고 판단 (다만, AFC패키지 배제에 따른 손실과 각종 비방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도 협상이 가능) ○ MBC는 SBS에 제안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이후 MBC의 보도는 사실보도이고 비방보도가 아니며, SBS가 재판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SBS가 주장하는 비방보도는 없을 것임 - 구매 희망 : 2010 남아공월드컵 전경기, SBS가 보유한 모든 권리, 가격은 방송3사 균등 분담, 방송3사 합동방송 또는 순차방송(1경기 2사) - 수수료 3% 공동분담, 기종료된 Other Events 방송권료 OOO 달러 차감, 뉴미디어 방송권료 협의 후 가격 또는 비율 확정, Other Events 단독수행에 따른 비용과 손실, 제반비용(송금이자, 보험료)은 SBS가 증빙서류 제출시 분담 - 남아공월드컵 가치 상승,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각종 비방으로 인한 SBS의 손실, 위험부담 비용, AFC패키지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SBS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후 가격산정에 반영
2010. 4. 5 (회의참석시 공문전달)	<p>◇ 시간 : 15:00 ~ 16:00</p> <p>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p> <p>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김종현 스포츠제작부장, 송민근 스포츠제작부 차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엄재용 정책팀 차장, 이상근 스포츠제작팀 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MBC의 제안에 대한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방보도가 아닌 사실보도라는 주장에 유감, 실효성 있는 비방보도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 - 제안에 대한 답변 : 방송권은 지상파권리에 한정, 전경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 제시 요청, 중계방식은 재판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논의가 가능할 것 (단, AD카드와 IBC시설은 신청시기가 지나 제한적이거나 신청불가함을 감안바람) - 기종료된 대회의 방송권료 600만 달러의 차감은 수용 불가 - 뉴미디어방송권리는 재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협의대상이 아님 - 남아공월드컵 가치 상승,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각종 비방으로 인한 SBS의 손실, 위험부담 비용, AFC패키지에 따른 손실 등을 포함한 가격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AFC패키지 배제에 따른 손실과 각종 비방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도 협상이 가능) - MBC의 전향적인 태도와 더 구체적인 제안을 기대함
2010.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는 SBS에 금액을 제안하고 SBS의 공식적인 금액을 4.12까지 제안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범위 : 지상파, 지상파라디오, 지상파DMB - 방송권료 : OOO 달러(SBS Int 수수료 포함) - 추가금액 : 2007 FIFA U-17 월드컵 IS 제작비용, 송금이자·보험료 등 제반비용은 SBS가 증빙하면 추가 지불 가능
2010.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는 MBC에 금액 제안 재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가 제안하는 각종 요소를 반영하여 금액 재산정 요청 -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 가치상승은 한국·북한·일본이 본선에 진출함에 따라 추정 할 수 있는 광고 예상판매액(약 316억원)과 탈락시 예상되는 광고 예상 판매액(106억원)을 전문회계방식을 이용하여 비교하면 산출가능하다고 판단
2010. 4.13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는 SBS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소 검토 기자회견 ○ SBS는 MBC의 기자회견에 대한 SBS 입장 보도자료 배포

※ 음영 부분(일자)은 수발신 공문의 내용이며, 비음영 부분은 회의 내용임

4. 위법성 판단

가. 관련 조항

- 방송법은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자 또는 대리인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

< 관계 법령 >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방송법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o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자가 국민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화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중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른 방송사업자가 그 구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에 해당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의 중지, 개선계획의 제출 등 시정조치 및 중계권료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시정조치 미이행시에 한 함)할 수 있도록 규정

< 관계 법령 >

- ※ 방송법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 방송권자등은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 방송권자들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 방송권자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 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 구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 구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 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4 (시정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의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1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5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2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3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3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 · 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한다.
-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로 한다.

- 본 건에서는 MBC가 현재까지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을 SBS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나. 정당한 사유 없는 중계권 구매의 거부 · 지연 여부

(1) 판단 기준

- o 일반 국민이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도입배경·목적 및 취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 방송법이 지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
- 방송법 제76조, 제7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중계권자와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충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의무”(이하 “성실한 협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 구체적으로 성실한 협상 의무 준수 여부는 2006년부터 2010.4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에 임하였는지 여부,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대안, 협상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공문 등 교환 내용, 협상 참여자의 직위, 협상에 임하는 태도 및 그간의 협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2)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의 거부 · 지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 o 위 기준에 의할 때 2006.11월부터 2007.3월까지는 피심인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였다고 인정됨

< 판단 논거 >

- 5개월간 총 8차례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중 중계권 판매·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볼 수 있는 본부장급 회의가 5차례
- 회의를 통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료 인상분 분담, 비지상파 권리의 배분 등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피심인들의 입장이 도출
- 그러나, 2007.4월부터 2009.12월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심인들 모두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MBC가 협상을 태만히 한 사실이 두드러짐

< 판단 논거 >

- 31개월간 총 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고, 본부장급 회의는 단 1차례도 없었음
- 동 기간 중 주요 쟁점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없음
 - 초기에 도출된 주요 쟁점 중 ①중계권료 인상분 및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2007.2.6일 (SBS) 및 22일(KBS·MBC), ②SBS 인터내셔널에 대한 수수료 인정여부 및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2007.2.22일, ③중계권의 양도 범위(지상파 관련 권리 vs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2007.2.22일 이후 '10.3월 중순까지 대안이 제시된 바 없음
- SBS의 수차례에 걸친 AFC 패키지 중계권 배분 요청 및 올림픽·월드컵 협상 요청에 대하여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선배분 등으로 대응하면서 협상에 사실상 불응
- 2009.12월 이후 2010.3.17일 방통위의 자율협상 권고 이전까지 MBC는 협상 의지는 보였으나, 대안제시·보도행태 등을 고려할 때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판단 논거 >

- 4개월간 총 6차례 회의(4회는 방통위 주관)가 개최되었으나 본부장급 회의는 단 1차례에 불과하고, 그것도 방통위 주관 회의에 참석한 것임
- 자사 뉴스채널, 신문광고 등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사 입장만을 일방 전달하는 행태를 보임
-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 및 남아공 월드컵이 임박하여 협상 시한이 매우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진전된 대안 제시가 미흡함

- o 2010.3.17일 자율적 협상 권고 이후에도 MBC는 구체적인 구매 희망 가격의 제시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판단 논거 >

- o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SBS가 제기한 각종 요소를 포괄하는 총괄적 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 SBS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는 등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태를 보임

(3) 소결

- o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에 임하였는지 여부,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대안, 협상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공문 등 교환 내용, 협상 참여자의 직위, 협상에 임하는 태도 및 그간의 협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MBC는 2007.4월 이후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방송법상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중계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o MBC는 2007.4월부터 2009.12월 이전까지 SBS와의 협상을 태만히 하여 중계권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 2010.3.17일 방통위의 자율협상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구매 희망 가격의 제시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성실한 협상의무를 불이행

5. 공정위 의견

- 본 건 행위는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은 법 목적 및 취지가 다른 만큼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적의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피심인 의견

- ①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대안 제시가 미흡했던 것이므로,

 -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계권 구매의 거부·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함

- (판단) 협상 상대방이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협상 대상과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구매의 거부·지연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본 건의 주요 쟁점인 중계권료 인상분 분담·비지상파 권리의 배분 등은 협상 대상인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이고,
 - 양측이 제시한 조건은 협상 초기에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안 당시에는 수용이 어렵더라도 향후 협상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 MBC가 2007.4월 이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중계권 구매의 거부·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7.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 o MBC는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 의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함

나. 그 밖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o MBC는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구매 희망가격을 2010.4.26일(월)까지 SBS에게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30일(금)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5.3일(월)까지 방통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구매 희망가격을 2010.8.31일(화)까지 SBS에게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매월 말 1회씩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8.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 o MBC는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2.29. 시행]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결론

- o 상기 MBC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3호, 제76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0. 4. 2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이 경 자 (인)

위 원

송 도 균 (인)

위 원

형 태 근 (인)